

무배당 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

보험약관

무배당 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 보험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기초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법 제16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법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 장래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입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이 계약의 보험금입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단체 및 가입자단체)

① 이 계약에서 “단체”라 함은 법 제13조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가입자단체”라 함은 동일 계약에 속하는 가입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계약자는 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로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제5조 (가입자의 자격)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제14조(가입자의 추가가입)에 의한 추가 가입시 가입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6조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 ① 이 계약의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자를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납입한 추가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다음 각 호의 통지 또는 지시(이하 "통지"라 합니다)는 관련 법규 및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통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1. 부담금의 통지
 2.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3. 급여의 지급지시
 4.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
 5. 이전에 따른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지시
 6. 적립금의 반환통지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이 수행 하도록 정해진 업무
- ② 제1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 지시의 이행
 5. 급여 등의 지급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자산관리기관이 수행 하도록 정해진 업무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나 가입자 또는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청약서 부분

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자산관리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자산관리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② 제1항의 협정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 체결이후 계약자는 연금규약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① 가입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협정서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세목(이하 “보험세목”이라 합니다)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세목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보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험세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보험세목 변경시 보험세목간 적립금 이전은 각 보험세목의 해약환급금 지급 및 부담금 납입 절차를 따릅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제6조(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③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제14조 (가입자의 추가가입)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된 자를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단체에 추가 가입한 가입자의 추가 가입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가입

자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합니다.

제15조 (가입자의 탈퇴)

계약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을 이전하거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가입자를 가입자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16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계약자로부터 가입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17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계약의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18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입자는 제17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의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부담금은 연금규약에 의해 산정 또는 결정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2. 추가부담금은 기본부담금 이외에 가입자가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 중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3.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제20조 (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4조(가입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 가입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추가 가입일부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가입자가 제5조(가입자의 자격)에 정한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제21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금리연동형, 이윤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22조 (급여의 산출 방법)

연금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가입자의 보험세목별 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세목별 적립금은 각 보험세목별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23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4조 (소멸시효)

가입자의 급여 청구권, 부담금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5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13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지 청구서(회사양식)
2. 해약환급금 수령대상 가입자 명부(회사양식) 또는 이전받을 회사의 가입자 명부 사본
3. 기타 계약자가 해지 및 자산관리계약의 이전 등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6조~제27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6조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 지표금리,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7조 (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6조(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공시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28조~제30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8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부담금 납입시 회사의 협정서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가입자 나이가 연금규약에서 정한 정년퇴직에 의한 급여지급이 발생하는 나이(이하 “정년나이”라 합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제4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정년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 긴 단위보험으로 자동설정합니다. 단,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정년나이까지의 기간이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짧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금리연동형으로 보험세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29조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율보증형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30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6조(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공시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율(별표 1참고)이 적용된 금액이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31조~제40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1조 (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6조(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입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급여를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5영업일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공

시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32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③ 가입자는 제35조(가입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34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의 규정에 의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적립금과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4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에 펀드순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단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합니다.
2. 혼합형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단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합니다.
3. 인덱스혼합형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합니다. 단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채권”에의 투자가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다음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6.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7.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 제1항에서 투자적격 채권에의 투자가 함은 신용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는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 적용)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에서 “주식”에의 투자가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2.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3.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4.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5.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제1항에서 “채권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가함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CD금리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등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의 평가액은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합니다. “주식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가함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 등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의 평가액은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합니다.

⑦ 제1항에서 “유동성자산”에의 투자가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합니다)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합니다)
2.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매입
3. 투자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 이내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4.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방법

⑧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투자가 가능 대상은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계법

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5조 (가입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34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③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가입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0조(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36조 (가입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가입자는 부담금의 펀드별 편입비율과 가입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만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금은 펀드자동재배분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 변경된 펀드자동재배분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 ③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가입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7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8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수수료(자산관리 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9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35조(가입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입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가입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4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2조 (인감신고)

① 계약자는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니다.

제4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라 합니다)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8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합니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left(\frac{1 - i_j}{1 - i_h} \right)^{\epsilon \cdot n}$$

(1) MVA의 최댓값은 5%로 합니다.

(2) $i_j > i_h$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합니다.

주)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

-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 ϵ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

- n_t : 365 또는 366

② i_j : j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③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 $i_h = i_{h-1} + (i_{h+1} - i_{h-1}) \times m' / (12 \times n')$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 단,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 i_{h+1}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

-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

-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3. 해지되는 시점에 단위보험의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이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의 공시이율보다 높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